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본 조례의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
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 (안 제5조)
- 서비스기업 지원 보조금 한도 확대 (안 제24조)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확대 및 인구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 지원 체계 구축 (안 제27조의2~제30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충청북도 내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는 기업이 충북도 내 신·증설 투자 시 총 투자금액의 10% 한도에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작아 기존 보조 비율(투자금액의 10%)로 지원 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은 50억원, 즉 제조업(100억) 대비 50% 수준으로 이에 따라 서비스업 관련 기업 및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의 규정의 정비도 필요함
- 이에 상술한 사항을 반영하여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의 경우 ‘21년 1월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 정의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점에서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초기창업자’의 정의를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21년 12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전부개정 되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기준(업력)이 개정된 법령과 달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이를 정비한 것임 또한, 제13호의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의의 경우 현행 제28조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데,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불필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용어가 새로 정의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5조는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설치하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의원의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보여짐
- 안 제24조는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제조업 수준(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별도로 정할 시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서비스업 관련 기업 및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안 제27조의2는 기존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전정착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투자기업의 상시고

용인원이 도내 이전 시 지원하던 보조금을 상향(10만원→50만원) 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도내 인구증가를 도모한 것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8조**는 안 제27조의2와 같이 인구증가 유도를 위해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획득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경우 2%범위에서 지원범위를 가산하도록 하고,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에게는 3%범위에서 지원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29조**는 서비스업 지원 범위를 10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원한도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30조**는 대규모 투지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제2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제4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35조**는 지원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 근거로 인용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없는 근거 조항의 인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라고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 및 투자에 관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

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라. 종합의견

- (필요성)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서비스업의 지원 한도가 제조업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충북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차원의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 운영을 장려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 (타당성) 본 개정조례안은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인구증가 유도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며,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 보여짐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지원으로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금의 상향, 지원범위 가산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이전지원금 상향, 출산장려, 가족친화) 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역경제와 인구문제 대응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